

시·도협회 선수위원장 선거관리지침 표준

2020. 09. 24. 제정

제1조 (목적) ① 본 지침은 대한장애인당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의 선수위원회운영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한 시·도지부의 선수위원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 선수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한 것 이외에는 협회 선수위원장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며,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 (선거사무 관장) 선수위원장 선거사무는 해당 시·도지부 사무국에서 관장한다.

제4조 (선거사무) 시·도지부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선거공고
2. 선거인 명부 확인 및 관리
3. 입후보등록 고지
4.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검토 및 조치
5. 선거운동의 제한, 정견발표에 관한 관리
6. 투표용지에 관한 업무
7. 선거(투·개표)에 관한 업무
8. 선거의 연기 및 재선거에 관한 업무
9.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
10. 공명선거에 관한 업무
11. 당선자 보고 및 선포
12. 선거지침 유권해석 등에 관한 업무
13. 기타 선거업무 제반사항에 관한 업무

제5조 (선거일 등의 공고) ① 선거일이 확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시·도지부와 중앙협회 및 시·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

제6조 (선수위원장 후보자 자격요건) 협회에 등록된 시·도지부 소속의 선수이어야 한다.

제7조 (선수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선수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5. 국회의원

제8조 (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) ① 선수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제출처에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1. 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 2. 이력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
- ② 시·도지부 사무국은 선수위원장 후보자를 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부(별지 제4호 서식)에 등재한 후 접수증(별지 제5호 서식)을 교부한다.
- ③ 선수대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에 선수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해당 시·도지부와 중앙협회 및 시·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제9조 (선거인명부 작성) ① 사무국은 선수위원장 후보자 접수 이후 선거인명부(별지

제7호 서식)를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선거인명부는 선수위원장 후보자에게 열람을 허용한다.

제10조 (선수위원장 후보자 정견발표) 선수위원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는 제11조 선거 방법에 따라 대면 정견발표 또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, 발표방법 및 일시·장소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.

제11조 (선거방법) ① 투표는 투표소를 이용한 **현장**투표 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로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이를 혼용할 수도 있다.

② 투표는 선거인의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.

③ 전자투표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·도지부 회장이 따로 정하며, 투표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 내지 제16조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.

제12조 (투표용지) ① 투표용지(별지 제8호 서식)는 시·도지부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.

②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“1, 2, 3”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별도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(접수) 순서에 의한다.

제13조 (감표위원 선정) 투표 감표를 위한 감표인은 선거인단 중 3인으로 선정한다.

제14조 (투표) ① 투표인은 감표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.

②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
제15조 (참관인 선정) 각 후보자는 필요할 경우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협회 사무국에 등록(별지 제9호 서식) 할 수 있다.

제16조 (무효투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.

1.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.

2.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.
3.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.
4.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.
5. ○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.
6. ○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.
7.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.

제17조 (선수위원장의 선출) ① 선수위원장은 협회에 등록된 선수 중 시·도지부 소속 선수들의 직선제로 선출한다.

② 선수위원장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.

1. 선수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2.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3.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,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제18조 (선출무효) 선수위원장은 선임 후에도 제7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촉된다.

제19조 (개표결과 보고서 작성) 감표인은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 보고서(별지 제 10호 서식)를 작성 날인 후 시·도지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선수위원장 당선인 공고) 시·도지부 사무국은 선수위원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선수위원장 당선인을 해당 시·도지부와 중앙협회 및 시·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 (부당 선거활동 금지) ① 선수위원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.

1.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,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
2.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
3.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

4. 기타 시·도지부에서 공지한 사항

- ② 제1항의 부당 선거활동 금지사항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법제·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으며, 제재내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다.

부 칙 (2020. 09. 24.)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○○장애인당구협회 제00대 선수위원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
○ 년 월 일 시까지
2. 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
○ 년 월 일 시
3. 선수위원장 선거
○ 일 시 : 년 월 일 시
○ 장 소 :

년 월 일

○○장애인당구협회
회 장 0 0 0

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

- 성 명 : (한자 :)
- 생년월일 : (주민등록번호 :)
- 주 소 :
- 직 업 :
- 연 락 처 : (자택 :) (직장 :)
(핸드폰 :)
- 이력사항 : 첨부(사진 포함)

상기 본인은 ○○장애인당구협회 제00대 선수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입후보자 : (인)

○○장애인당구협회 회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사 진			이 력 서				
			성 명	Ⓜ		주 민 등 록 번 호	
			생년월일 년 월 일 (만 세)				
현 주 소					자택전화		
E- mail					휴대전화		
년	월	일	학 력 및 경 력 사 항			발 령 청	
위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확실합니다. 년 월 일 (인)							

제00대 선수위원장 후보자 접수대장

[후보자]

- 성 명 : (한자 :)
- 생 년 월 일 : (주민등록번호 :)
- 주 소 :
- 직업 (직위) :
- 접 수 일 자 : 년 월 일
- 접 수 번 호 :

상기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함.

확인자 : ○○장애인당구협회(직위) (성명) (인)

절 취 선

접 수 증

- 후보자 성명 : (한자 :)
- 생 년 월 일 : (주민등록번호 :)
- 주 소 :
- 직업 (직위) :
- 접 수 일 자 : 년 월 일
- 접 수 번 호 :

상기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장애인당구협회 선수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장애인당구협회 회장 (인)

[별지 제6호 서식]

제00대 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

년 월 일 선수위원회 에서 선출하는 제00대 ○○장애인당구협회 선수위원장 선거의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이를 공고합니다.

기호	성명	생년월일	직업 및 직위	비고

년 월 일

○○장애인당구협회

회 장 ○ ○ ○

연번

제00대 ○○장애인당구협회
선수위원장 선거 투표용지

감 표 자	
성 명	서 명

협회

기호	1	2	3	4
후 보 자 성 명				
기 표 란				

개표 참관인 신고서

년 월 일 실시하는 선수위원장 선거의 개표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

1. 후보자 성명 :

2. 개표참관인 인적사항

번호	소 속	성 명	성별	생년월일	비고

년 월 일

신고자 : (인)

○○장애인당구협회 회장 귀하

개 표 결 과 보 고 서

제00대 ○○장애인당구협회 선수위원장 선거 개표결과

기호	후보자 성명	득표수
		표
		표
		표
		표

년 월 일 실시한 제00대 ○○장애인당구협회 선수위원장 선거의 개표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감 표 자 : (인)

감 표 자 : (인)

○○장애인당구협회 회장 귀하

제00대 선수위원장 당선인 공고

년 월 일 선수위원회에서 실시한 제00대 ○○장애인당구협회
선수위원장 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당 선 인

- 성 명 :
- 생 년 월 일 :
- 직업 및 직위 :

년 월 일

○○장애인당구협회